

『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 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『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』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(안 제7조제1항)
- 구미시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(안 제7조제4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“안전관리계획”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지역축제의 “안전관리계획”을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제1항)
- 단서규정을 두어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4항)

○ 검토 결과

-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“안전관리계획”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축제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므로 지역축제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“안전관리계획”의 심의대상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것으로만 규정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